

# 금산수삼 전국 판매유통 파트너 선정 지원 모집공고

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인삼 소비 촉진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금산수삼 전국 판매유통 파트너 선정 지원」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3일

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



## 1 공모 개요

- (사업명) 금산수삼 전국 판매유통 파트너 선정 지원사업
- (공고기간) 2025. 4. 23.(수) ~ 5. 14.(수) / 21일간
- (사업기간) 2025. 4. ~ 11. (8개월)
- (지원대상) 관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하며, 수삼 직매입을 통해 상품 구성, 유통 납품, 판촉까지 일괄 수행 가능한 생산자 단체\*

\*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

<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> [시행 2022. 7. 5.] [대통령령 제32756호, 2022. 7. 4., 일부개정]  
제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 별 제3조 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2. 22.>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3. 「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
4. 삭제 <2015. 12. 22.>
5.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·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
\*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혹은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

- (지원규모) 6개 업체 내외(업체당 지원금 최소 5천만원 이상 차등 지원)
  - 총사업비(100%) = 지원금(50%) + 업체 자부담(50%)
  - ※ 예시) 총사업비 1억 = 지원금 5천만원 + 자부담 5천만원
  - ※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업체 부담
  - ※ 자부담 역량에 따라 사업신청(자부담 증빙은 총 사업비의 50%)
- (지원내용) 금산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온·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
- (지원항목) 포장비, 홍보비, 인건비, 물류비 등
- (지원범위) 금산에서 경작된 인삼 등을 직매입하여 구성한 상품
  - **상품구성을 위한 금산인삼 구매 조건**

- ① 순위 : 금산에서 경작한 **GAP인삼**(전체 매입의 **최소 20% 충족**할 것)
- ② 순위 : 금산에서 경작한 **안전성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**(\*검사비 지원 : 진흥원)
- ③ 순위 : 금산에 주소를 둔 인삼경작 농가가 타지에서 경작한 인삼
- ※ **구매 시** 금산 경작 인삼(① 순위 + ② 순위)이 전체 매입의 50%를 반드시 충족
- ※ 구매한 전체 매입량 및 금액 등 매입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할 것

## 2 신청 · 접수 방법

- (접수 기간) '25. 5. 13.(화) ~ 5. 14.(수) 09:00 ~ 17:00까지
  - ※ 접수 마감일 17:00시까지만 제출한 서류만 인정
- (접수 방법) 방문접수
  - (접 수 처)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(2층) 선진유통TF팀
  - (제출서류)
    -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참여의사 협약서
    - ②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
    - ③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)
    - ④ 매출 증빙 서류(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)
    - ⑤ 수삼유통 매출 증빙 서류(최근 3개년도)
    - ⑥ 자부담 확보내역(현금잔액증명 및 정기예금증서 등)

### 3

## 평가·선정방법

○ (평가선정)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심사(서면평가)

구 분	선정 절차 및 기준
서면 평가	- (선정심의위원회) 내부위원 3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- (심의내용) 추진계획서 및 서류심사(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) → 기업역량, 유통망확보, 금산인삼유통실적, 유통시설보유, 지역기여도 여부 등 심의

○ (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) 유·무선 개별 통지

### 4

## 지원금 지급 및 정산

○ (지원금 지급 및 정산) 사업종료 후 정산 지급

- 사업종료 후 완료 보고서 및 정산 증빙 자료 제출
- 정산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
-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과물이 없으며, 증빙서류 미인정 받은 경우, 해당 항목의 사업비 불인정
- 최소한의 수삼 매입 목표량 설정 → 매입액 미달성시 지원금액 차감

\* 지원금액 : 100,000천원 → 수삼매입 30ton 이상

\* 지원금액 : 50,000천원 → 수삼매입 15ton 이상

※ 지원금 지급 불가시, 기 지출한 사업비는 전액 생산단체 부담

※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이행

※ 지원금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통장만 인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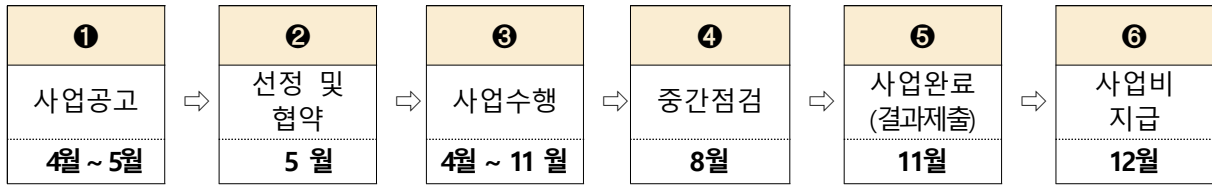
### 5

## 사업 수행 절차

○ (사업수행 기간) 선정통보일(5월 중순) ~ 2025. 11. 30 / 약 7개월 간

## ○ 전체 사업 일정(안)
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(지연)될 수 있음



## 6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,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
-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시 지원금은 미지급함
-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,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(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)

## 7 문의처

-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선진유통TF팀 041-750-1643

- 붙임
1. 사업 신청서 양식 1부
  2. 사업 계획서 양식 1부
  3. 참여의사 협약서 양식 1부
 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1부